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8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은정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문경시 C 임야 7070㎡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835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3.경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까지 2,600만 원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잔금 1,0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선 개발하여 토목공사 완료 후 은행대출로 지불하기로 하되 8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함과 동시에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방법으로 원고는 2020. 6. 5.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3개월 이내에 가.항 기재 잔금을 받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20. 6. 12.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한 후 2020. 9. 25.까지 가.항 기재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고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남인수